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계룡시
결산검사위원회

목 차

| | |
|-----------------------|----|
| 결산검사 의견서 | 1 |
| I. 결산검사 개요 | 3 |
|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 7 |
| 1. 재정의 개황 | 9 |
| 2. 세입·세출 결산 총괄 | 10 |
| 3. 기금의 결산 | 16 |
| 4. 재무제표의 결산 | 18 |
| 5. 성과보고서 | 20 |
|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22 |
| III. 개선 권고 사항 | 25 |
| IV. 수 범 사 례 | 41 |

결 산 검 사 의 건 서

계룡시장 귀하

2021년 4월 21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의회로부터 계룡시 2020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1년 4월 2일부터 2021년 4월 21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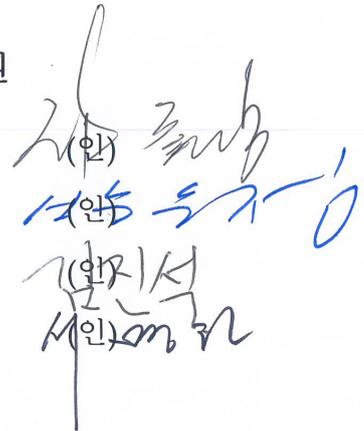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0회계연도 계룡시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계룡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계룡시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결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어 개선 및 권고사항을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0회계연도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 | | | |
|------|---|---|---|
| 대표위원 | 박 | 춘 | 엽 |
| 위 원 | 박 | 수 | 정 |
| 위 원 | 김 | 진 | 석 |
| 위 원 | 서 | 명 | 하 |



I. 결산 검사 개요

I. 결산검사 개요

1. 검사 개요

(기간) 2021. 4. 2. ~ 2021. 4. 21. (20일간)

(장소) 계룡시청 통계조사실

(방법) 2020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토대로 결산내용 검사

(관계자 의견청취)

2.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

(선임) 제15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위촉) 2021. 4. 2.(의장실)

(명단) 위원 4인

| 구분 | 성명 | 담당업무 | 비고 |
|------|-------|----------|-------|
| 대표위원 | 박 춘 엽 | 결산검사 총괄 | 계룡시의원 |
| 위 원 | 박 수 정 | 세출 분야 | 전직공무원 |
| 위 원 | 김 진 석 | 세입 분야 | 세 무 사 |
| 위 원 | 서 명 하 | 기금·성과 분야 | 전직공무원 |

3. 검사 중점사항

(1) 세입분야

- ① 합리적인 세수판단 및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 여부
- ② 지방세 부과, 징수, 결손 및 과오납 등의 적정 여부
- ③ 체납액 정리 및 결손처분의 여부
- ④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2) 세출분야

- ① 세출예산의 적법편성 및 집행, 결산의 정확성 여부
- ② 이월액의 적정성 및 불용액에 대한 타당성 검사
- ③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검토

(3) 기금의 결산

- ① 기금운용 현황
- ② 기금관리 운영의 적정성 여부

(4) 재무제표의 결산

- ① 재무제표의 전반적 적정성에 대한 검사

(5) 성과보고서

- ① 성과계획의 적정성 여부
- ② 성과실적의 신뢰성 여부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① 채권현재액 산정의 적정성 검토
- ② 채권·채무 관리의 적정 여부
- ③ 공유재산 관리실태 및 대장 등재 여부
- ④ 정수물품관리실태 및 현재액의 일치 여부

(7) 결산관계서류

- ① 세입·세출회계별 결산액의 금고 마감계수 일치 여부
- ② 결산서 및 결산설명 부속 자료 등 결산관계서류의 내용에 착오기재 또는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등 관계계수 정확성
- ③ 출납공무원이 출납한 세입금을 출납정리기한(1.20)까지 금고에 납입·완료하였는지 확인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계룡시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백만원, %)

| 구분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일반회계 | 세입 | 164,095 | 177,770 | 206,173 | 268,432 | 261,887 |
| | 세출 | 134,670 | 136,262 | 144,126 | 236,683 | 220,834 |
| | 결산상잉여금 | 29,425 | 41,508 | 62,047 | 31,749 | 41,052 |
| 공 기 업 특별회계 | 세입 | 38,797 | 36,134 | 44,734 | 70,079 | 74,432 |
| | 세출 | 24,059 | 13,074 | 14,275 | 21,178 | 28,672 |
| | 결산상잉여금 | 14,738 | 23,060 | 30,458 | 48,902 | 45,760 |
| 기 타 특별회계 | 세입 | 210 | 220 | 3,418 | 3,434 | 301 |
| | 세출 | 198 | 198 | 298 | 3,409 | 218 |
| | 결산상잉여금 | 11 | 21 | 3,120 | 25 | 83 |
| 총계 | 세입 | 203,102 | 214,124 | 254,324 | 341,945 | 336,621 |
| | 세출 | 158,927 | 149,535 | 158,699 | 261,269 | 249,725 |
| | 결산상잉여금 | 44,174 | 64,589 | 95,625 | 80,676 | 86,896 |

- 계룡시의 2020회계연도 총세입은 336,621백만원, 총세출은 249,725백만원으로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86,896백만원이다.
- 세입에 비해 세출의 감소율이 약 2.8% 높으며, 세입대비 세출의 감소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약 6,220백만원 증가하였다.
- 최근 5년 평균증가율은 세입은 13.5%, 세출은 12.0%로 세입의 증가율이 높으며, 잉여금의 증가율은 25.5%로 지난 회계연도보다는 다소 증가하였으며, 지난 4개년과 비교해 볼 때 평균금액을 상회하므로 예산의 적정 운용을 통해 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총괄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 구분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A) | 세출결산액(B) | 결산상 잉여금(C=A-B) |
|---------|-----------------|-----------------|-----------------|-------------------|
| 합계 | 330,041,122,190 | 336,620,748,158 | 249,725,215,450 | 86,895,532,708 |
| 일반회계 | 253,016,474,920 | 261,887,243,827 | 220,834,492,812 | 41,052,751,015 |
| 특별회계 | 77,024,647,270 | 74,733,504,331 | 28,890,722,638 | 45,842,781,693 |
| 공기업특별회계 | 76,791,143,270 | 74,432,011,307 | 28,672,176,548 | 45,759,834,759 |
| 기타특별회계 | 233,504,000 | 301,493,024 | 218,546,090 | 82,946,934 |

| 구분 | 현년도 채무 상환 | 이월액(D) | | | 보조금 반납금 | 순세계 잉여금 |
|---------|-----------------|---------------|---------------|--------------------------------|---------------|----------------|
| | | 명시 | 사고 | 계속비 | | |
| 합계 | - | 4,011,731,050 | 1,106,391,840 | 22,137,937,184 | 1,911,928,886 | 57,727,543,748 |
| 일반회계 | - | 4,011,731,050 | 862,385,840 | 21,038,234,964 | 1,815,024,686 | 13,325,374,475 |
| 특별회계 | - | - | 244,006,000 | 1,099,702,220 (924,999,600) | 96,904,200 | 44,402,169,273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244,006,000 | 1,099,702,220 (924,999,600) | 91,611,510 | 44,324,515,029 |
| 기타특별회계 | - | - | - | - | 5,292,690 | 77,654,244 |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36,620,748,158원으로 예산현액 330,041,122,190원보다 6,579,625,968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4.2%인 249,725,215,45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6,895,532,708원이다.

- 이중 명시이월비 4,011,731,050원, 사고이월비 1,106,391,840원 및 계속비이월 22,137,937,184원과 보조금반납금 1,911,928,886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서 현년도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7,727,543,748원이다.

(2)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원)

| 구 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당해연도 | 253,016,474,920 | 265,199,664,155 | 261,887,243,827 | 150,176,760 | 3,162,243,568 |
| 전 년 도 | 266,200,116,400 | 277,656,199,355 | 268,432,101,463 | 946,749,010 | 8,277,348,882 |
| 증 감 | △13,183,641,480 | △12,456,535,200 | △6,544,857,636 | △796,572,250 | △5,115,105,314 |

- 본 회계연도는 예산현액 253,016,474,920원의 104.8%인 265,199,664,155원을 징수결정하여 103.5%인 261,887,243,827원을 수납하였고, 1.2%인 3,162,243,568원이 미수납되었으며, 0.1%인 150,176,760원이 결손 처분됨.
- 예산현액의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5.0%인 13,183,641,48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감소된 데 기인함.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당해연도 98.8%로 전년도 대비 2.1%p 증가하였고,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당해연도 103.5%이고, 전년도는 100.8%로서 전년도에 비해 2.7%p 증가하였음.
-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946,749,010원보다 796,572,250원이 감소한 150,176,760원으로서 지방세수입 부문 702,544,870원, 세외수입 부문 244,204,140원이며, 향후 지속적인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행정 절차가 필요함.

목별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 세입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합 계 | 253,016,474,920 | 265,199,664,155 | 261,887,243,827 | 150,176,760 | 3,162,243,568 |
| 지 방 세 | 25,103,000,000 | 27,901,254,710 | 26,812,935,220 | 150,176,760 | 938,142,730 |
| 세 외 수 입 | 10,420,748,000 | 15,328,364,425 | 13,104,263,587 | - | 2,224,100,838 |
| 지방교부세 | 84,045,650,000 | 84,534,591,000 | 84,534,591,000 | - | - |
| 조정교부금등 | 15,239,000,000 | 20,249,050,000 | 20,249,050,000 | - | - |
| 보 조 금 | 70,023,710,000 | 69,628,655,500 | 69,628,655,500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48,184,366,920 | 47,557,748,520 | 47,557,748,520 | - | - |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10.2%인 26,812,935,220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5.0%인 13,104,263,587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2.3%인 84,534,591,000원으로 재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7.7%인 20,249,050,000원, 보조금은 26.6%로 69,628,655,5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2%인 47,557,748,520원이 수납되었음.

- 국도비보조금은 예산현액 70,023,710,000원보다 395,054,500원이 적은 69,628,655,500원을 수납하였는데, 이는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내용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거나 마무리 추경에 교부가 확실치 않은 사업비를 편성함으로써 발생하였음.

- 수입액은 금고의 총수입 증명서와 부합함.

나. 세출결산

(단위 : 원)

| 회계별 | 예산액 | 예산결정후 증·감액 | | |
|------|-----------------|----------------|---------|---------|
| |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사용액 | 전용 증·감액 |
| 당해연도 | 228,378,127,000 | 24,638,347,920 | - | - |
| 전년도 | 240,387,186,000 | 25,812,930,400 | - | - |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집행잔액 | 지출액/ 예산현액 (%) |
|-----------------|-----------------|----------------|---------------|---------------|
| 253,016,474,920 | 220,834,492,812 | 25,912,351,854 | 6,269,630,254 | 87.3% |
| 266,200,116,400 | 236,683,053,193 | 24,638,347,920 | 4,878,715,287 | 88.9% |

- 예산액은 228,378,127,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24,638,347,92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53,016,474,920원임.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3%에 해당하는 220,834,492,812원이며 이월액은 25,912,351,854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4,011,731,050원, 사고이월액은 862,385,840원, 계속비이월액은 21,038,234,964원(자금없는 이월액 0원 포함)임.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5%에 해당되는 6,269,630,254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지출잔액 3,058,553,931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4,343,900원, 보조금정산잔액 1,438,667,729원 등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지출잔액 등은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삭감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지출액은 금고의 지출액 증명서와 부합함.

(3)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 예산현액 ㉑ | 징수 결정액 ^㉒ | 실제 수납액 ^㉓ | 불납결손 | 미수납액 | 비율(%) | |
|----------|----------------|------------------------|------------------------|-------------|---------------|-------|-------|
| | | | | | | ㉔/㉑ | ㉕/㉑ |
| 특별회계 | 77,024,647,270 | 75,766,184,961 | 74,733,504,331 | 10,457,360 | 1,022,223,270 | 97.0 | 98.6 |
| 공기업특별회계 | 76,791,143,270 | 75,464,691,937 | 74,432,011,307 | 10,457,360 | 1,022,223,270 | 96.9 | 98.6 |
| 상수도사업 | 22,483,211,750 | 20,697,577,985 | 19,806,058,695 | 6,825,340 | 884,693,950 | 88.1 | 95.7 |
| 하수도사업 | 12,510,914,520 | 13,291,180,569 | 13,150,019,229 | 3,632,020 | 137,529,320 | 105.1 | 98.9 |
| 공영개발사업 | 41,797,017,000 | 41,475,933,383 | 41,475,933,383 | - | - | 99.2 | 100.0 |
| 기타특별회계 | 233,504,000 | 301,493,024 | 301,493,024 | - | - | 129.1 | 100.0 |
| 의료급여기금 | 224,252,000 | 292,220,994 | 292,220,994 | - | - | 130.3 | 100.0 |
| 장기미집행 | 9,252,000 | 9,272,030 | 9,272,030 | - | - | 100.2 | 100.0 |
| 2019년 합계 | 60,717,151,520 | 73,886,579,659 | 73,513,389,869 | 147,583,290 | 225,606,500 | 121.1 | 99.5 |

○ 수납액 74,733,504,331원은 예산현액 대비 97.0%로 전년대비 24.1%p 감소했고, 징수결정액 대비 98.6%로서 전년대비 0.9%p가 감소했으며, 미수납액은 1,022,223,970원으로서 전년대비 353.1%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가급적 정확한 추계를 통해 누락 없이 예산에 계상하는 정확성이 요구됨.

○ 수납액은 시금고의 총수입 증명서와 부합함.

나. 세출결산

(단위 : 원, %)

| 과 목 | 예산현액 ㉑ | 지출액 ㉒ | 다음연도 이월액㉓ | 집행잔액 ㉔ | 집행비율 |
|----------|----------------|----------------|--------------------------------|----------------|-------------|
| | | | | | 예산대비 ㉒/㉑ |
| 특별회계 | 77,024,647,270 | 28,890,722,638 | 1,343,708,220 (924,999,600) | 45,865,216,812 | 37.5% |
| 공기업특별회계 | 76,791,143,270 | 28,672,176,548 | 1,343,708,220 (924,999,600) | 45,850,258,902 | 37.3% |
| 상수도사업 | 22,483,211,750 | 6,200,695,508 | 1,356,723,380 | 14,925,792,862 | 27.6% |
| 하수도사업 | 12,510,914,520 | 10,266,465,270 | 911,984,440 | 1,332,464,810 | 82.1% |
| 공영개발사업 | 41,797,017,000 | 12,205,015,770 | - | 29,592,001,230 | 29.2% |
| 기타특별회계 | 233,504,000 | 218,546,090 | - | 14,957,910 | 93.6% |
| 의료급여기금 | 224,252,000 | 218,546,090 | - | 5,705,910 | 97.5% |
| 장기미집행 | 9,252,000 | - | - | 9,252,000 | - |
| 2019년 합계 | 60,717,151,520 | 24,586,369,561 | 3,553,486,270 | 32,567,688,739 | 40.5% |

- 예산현액은 77,024,647,27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7.5%에 해당하는 28,890,722,638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9.5%에 45,865,216,812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1,343,708,220원(자금없는 이월액 924,999,60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244,006,000원 계속비이월액은 1,343,708,220원(자금 없는 이월액 924,999,600원)임.
- 지출액은 시금고의 지출액 증명상의 지급액과 부합함.

3. 기금의 결산

○ 본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금 현황

(단위: 원)

| 구분 기금명 | 전년도말 조성액 ㉔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 | | 당해연도말 조성액 (㉕=㉔+㉖) |
|-----------------------------|------------------|-----------------|---------------|----------------|-------------------------|
| | | 계 ㉖=㉗-㉘ | 조성액 ㉗ | 사용액 ㉘ | |
| 합 계(9개 기금) | 53,979,371,840 | △9,965,977,441 | 5,307,350,379 | 15,273,327,820 | 44,013,394,399 |
| 재정안정화기금 | 47,537,737,670 | △13,232,499,480 | 1,608,943,520 | 14,841,443,000 | 34,305,238,190 |
| 자 활 기 금 | 203,701,020 | 52,861,450 | 52,861,450 | - | 256,562,470 |
| 노 인 복 지 기 금 | 590,398,640 | 58,856,380 | 58,856,380 | - | 649,255,020 |
| 체 육 진 흥 기 금 | 1,582,303,511 | 21,835,780 | 21,835,780 | - | 1,604,139,291 |
| 재 난 관 리 기 금 | 701,633,205 | △98,336,721 | 262,184,429 | 360,521,150 | 603,296,484 |
| 중소기업및소상공인 육 성 기 금 | 3,045,723,296 | △2,311,920 | 38,156,750 | 40,468,670 | 3,043,411,376 |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 242,143,796 | 48,567,080 | 79,462,080 | 30,895,000 | 290,710,876 |
|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 기 금 | - | 3,183,969,430 | 3,183,969,430 | - | 3,183,969,430 |
| 식 품 진 흥 기 금 | 75,730,702 | 1,080,560 | 1,080,560 | - | 76,811,262 |

○ 현재 계룡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종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의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53,979,371,840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5,307,350,379원을 더하고, 사용액 15,273,327,820원을 공제한 44,013,394,399원이다.

○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5년평균 증가율 |
|-----------|-------|-------|-------|--------|--------|-------------|
| 전년도말 조성액 | 5,616 | 5,807 | 5,995 | 6,027 | 53,979 | 76.1 |
| 당해연도 조성액 | 4,149 | 413 | 416 | 48,238 | 5,307 | 6.3 |
| 당해연도 사용액 | 3,959 | 225 | 383 | 286 | 15,273 | 40.1 |
| 당해연도말 조성액 | 5,807 | 5,995 | 6,027 | 53,979 | 44,013 | 65.9 |

○ 계룡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최근 5년간 당해연도말 조성액 기준 평균 65.9%p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임.

○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시금고의 잔액증명과 부합함.

4. 재무제표의 결산

(1) 재정상태와 운영결과

(단위: 원, %)

| 구분 | 2020년 | 2019년 | 전년대비 증감 | |
|--------------------|--------------------------|--------------------------|------------------------|--------------|
| | | | 금액 | 비율 |
| 자산 | 1,145,593,972,032 | 1,134,048,813,653 | 11,545,158,379 | 1.0 |
| I.유동자산 | 163,323,864,618 | 185,517,465,201 | △22,193,600,583 | △12.0 |
| II.투자자산 | 1,586,376,234 | 1,769,107,240 | △182,731,006 | △10.3 |
| III.일반유형자산 | 140,830,875,200 | 140,150,137,020 | 680,738,180 | 0.5 |
| IV.주민편의시설 | 229,150,070,306 | 218,700,268,673 | 10,449,801,633 | 4.8 |
| V.사회기반시설 | 608,346,690,437 | 585,733,053,569 | 22,613,636,868 | 3.9 |
| VI.기타비유동자산 | 2,356,095,237 | 2,178,781,950 | 177,313,287 | 8.1 |
| 부채 | 45,702,373,669 | 59,035,169,410 | △13,332,795,741 | △22.6 |
| I.유동부채 | 6,770,417,015 | 17,259,264,827 | △10,488,847,812 | △60.8 |
| II.장기차입부채 | - | - | - | - |
| III.기타비유동부채 | 38,931,956,654 | 41,775,904,583 | △2,843,947,929 | △6.8 |
| 순자산 | 1,099,891,598,363 | 1,075,013,644,243 | 24,877,954,120 | 2.3 |
| I.고정순자산 | 943,230,633,302 | 905,878,228,416 | 37,352,404,886 | 4.1 |
| II.특정순자산 | 44,030,706,932 | 63,224,564,489 | △19,193,857,557 | △30.4 |
| III.일반순자산 | 112,630,258,129 | 105,910,851,338 | 6,719,406,791 | 6.3 |
| 부채 및 순자산 총계 | 1,145,593,972,032 | 1,134,048,813,653 | 11,545,158,379 | 1.0 |

○ 2020회계연도 말 계룡시의 자산은 11,456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15억원 (1.0%)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이 증가한 데 기인함.

○ 반면 부채는 457억원으로 전년보다 133억원(22.6%) 감소하였음.

(2)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단위 : 원)

| 구 분 | 2020년 | 2019년 | 전년대비 증감 | |
|------------------------------|------------------|------------------|----------------|-------|
| | | | 금액 | 비율 |
| I.사업순원가(가-나) | 65,452,919,645 | 53,377,216,146 | 12,075,703,499 | 22.6% |
| 가. 사업총원가 | 157,131,839,772 | 128,964,317,922 | 28,167,521,850 | 21.8% |
| 나. 사업수익 | 91,678,920,127 | 75,587,101,776 | 16,091,818,351 | 21.3% |
| II.관리운영비 | 37,263,227,133 | 35,090,099,415 | 2,173,127,718 | 6.2% |
| III.비배분비용 | 11,903,542,260 | 8,654,367,075 | 3,249,175,185 | 37.5% |
| IV.비배분수익 | 8,118,309,210 | 8,562,196,082 | △443,886,872 | △5.2% |
| V.재정운영순원가 (I +II+III-IV) | 106,501,379,828 | 88,559,486,554 | 17,941,893,274 | 20.3% |
| VI.일반수익 | 133,362,237,921 | 143,095,824,896 | △9,733,586,975 | △6.8% |
| VII.재정운영결과 (V -VI) | (26,860,858,093) | (54,536,338,342) | 27,675,480,249 | 50.7% |

-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1,571억원에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916억원을 차감한 655억원이며, 순원가가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 185억, 환경보호 111억원임.
- 또한, 2020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363억원, 경비 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운영비용 6억원, 기타비용 11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66억원, 기타수익 15억원으로 각각 구성되어있음.
- 2020회계연도 계룡시의 재정운영결과는 △269억원으로 전년도의 △545억원 보다 276억원(50.7%)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이 175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5. 성과보고서

계룡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0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계룡시는 본 회계연도의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9개)-정책사업 목표(65개)-단위사업(10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0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 부서명 | 성과목표 | | | | | | 달성율 | 비고 |
|-----------|-----------|--------|-----|-------|----|-----|------|----|
| | 전략 목표수 | 정책사업목표 | | 성과달성도 | | | | |
| | | 개수 | 지표수 | 초과달성 | 달성 | 미달성 | | |
| 계 | 19 | 65 | 107 | 20 | 63 | 24 | 78% | |
| 정책예산담당관 | 1 | 2 | 6 | 1 | 4 | 1 | 83% | |
| 자치행정과 | 1 | 5 | 8 | 3 | 3 | 2 | 75% | |
| 사회복지과 | 1 | 6 | 8 | 2 | 2 | 4 | 50% | |
| 가족행복과 | 1 | 5 | 6 | 1 | 3 | 2 | 67% | |
| 민원봉사과 | 1 | 2 | 5 | 1 | 3 | 1 | 80% | |
| 세무회계과 | 1 | 2 | 4 | 0 | 4 | 0 | 100% | |
| 문화체육과 | 1 | 6 | 7 | 1 | 3 | 3 | 57% | |
| 안전총괄과 | 1 | 5 | 7 | 0 | 6 | 1 | 86% | |
| 일자리경제과 | 1 | 5 | 9 | 3 | 5 | 1 | 89% | |
| 환경위생과 | 1 | 6 | 8 | 4 | 4 | 0 | 100% | |
| 농림과 | 1 | 3 | 5 | 1 | 4 | 0 | 100% | |
| 건설교통과 | 1 | 6 | 7 | 0 | 5 | 2 | 71% | |
| 도시건축과 | 1 | 1 | 5 | 2 | 3 | 0 | 100% | |
| 상하수도과 | 1 | 2 | 2 | 0 | 1 | 1 | 50% | |
| 군문화엑스포지원단 | 1 | 2 | 2 | 0 | 2 | 0 | 100% | |
| 보건소 | 1 | 2 | 9 | 1 | 5 | 3 | 67% | |
| 농업기술센터 | 1 | 2 | 4 | 0 | 2 | 2 | 50% | |
| 의회사무과 | 1 | 1 | 2 | 0 | 2 | 0 | 100% | |
| 공공시설사업소 | 1 | 2 | 3 | 0 | 2 | 1 | 67% | |

-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에는 100% 달성 부서가 13개 부서였는데 비해 당해연도에는 세무회계과 등 6개 부서에서 100%를 달성하였고, 전체 달성률은 전년도 88%에서 낮아진 78%임.
-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 간에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하고 성과지표와 측정산식 간에도 연계가 되도록 작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정책사업목표와 단위 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며 성과지표를 정함에 있어 별다른 노력 없이도 100% 목표달성이 가능한 지표를 정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성과지표 설정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단위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정하고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성과달성도에 대한 원인분석을 할 때에는 내실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 다음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 제고가 필요함.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 전년도말 현재액은 1,738,496,540원에서 당해연도에 3,297,256원이 발생하고 182,739,59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1,559,054,206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 구분 | 전년도말 현재액 (가) | 당해연도 발생액 (나) | 당해연도 소멸액 (다) | 당해연도말 현재액 (라)=(가)+(나)-(다) |
|------|-----------------|-----------------|-----------------|------------------------------|
| 합계 | 1,738,496,540 | 3,297,256 | 182,739,590 | 1,559,054,206 |
| 일반회계 | 1,738,496,540 | 3,297,256 | 182,739,590 | 1,559,054,206 |

(2) 채무

- 해당없음.

(3) 공유재산

- 2020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원)

| 구분 | 전년도말 보유현황 | | 당해연도 증·감 현황 | | | |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 | |
|----------|-----------|-----------------|-----------------|----------------|----------------|----------------|----------------|-----------------|-----------------|
| | | | 증 | | 감 | | | | |
|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
| 합계 | 45,978 | 708,130,689,207 | 350 | 52,796,203,514 | 120 | 29,968,939,111 | 46,208 | 730,957,953,610 | |
| 계 | 45,898 | 671,446,227,412 | 334 | 33,305,777,414 | 107 | 23,054,601,533 | 46,125 | 681,697,403,293 | |
| 행정 재산 | 공용재산 | 425 | 131,774,920,373 | 88 | 5,119,806,292 | 1 | 118,297,300 | 512 | 136,776,429,365 |
| | 공공용재산 | 45,472 | 539,471,914,399 | 246 | 28,185,971,122 | 106 | 22,936,304,233 | 45,612 | 544,721,581,288 |
| | 기업용재산 | - | - | - | - | - | - | - | - |
| | 보존용재산 | 1 | 199,392,640 | - | - | - | - | 1 | 199,392,640 |
| 일반재산 | 80 | 36,684,461,795 | 16 | 19,490,426,100 | 13 | 6,914,337,578 | 83 | 49,260,550,317 | |

- 검사 결과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22,827,264,403원이 증가한 730,957,953,610원이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08,130,689,207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토지 4,848,625㎡/440,910,481,139원, 건물 81동/137,629,074,299원, 기타 입목죽 등 43,110건/152,418,398,172원으로 총 730,957,953,610원 상당이다.

(4) 물품

-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증감 현황

(단위 : 개, 원)

| 구분 | | 전년도말 보유현황 | 당해연도 증·감현황 | |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
|-----|-----|---------------|-------------|-------------|---------------|
| | | | 증 | 감 | |
| 합 계 | 수 량 | 483 | 32 | 44 | 471 |
| | 금 액 | 4,327,946,320 | 635,863,988 | 414,144,780 | 4,549,665,528 |

- 검사 결과 물품은 전년도 보다 221,719,208원이 증가한 4,549,665,528원이 확인되었다.
-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31종/483개 4,327,946,320원에서 2020년 11종/32개 635,863,988원을 취득하고, 10종/44개 414,144,780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28종/471개 4,549,665,528원이다.

Ⅲ. 개 선 권 고 사 항

2020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개요

- 검사대상 : 2020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등
- 기 간 : 2021. 4. 2. ~ 4. 21.(20일간)
- 검사위원 : 4명(시의원 1, 세무사 1, 전직공무원 2)
- 검사결과 : 개선 권고사항 8건

개선 권고사항 (8건)

| 개선 권고사항 | 부 서 |
|--------------------------------|-------------------|
| 1. 성과지표 달성률 제고 | 기획감사실 (예산팀 총괄) |
| 2. 특별회계 운영관리 철저 | 도시건축과 |
| 3.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징수 절차 미흡 | 민원봉사과 |
| 4. 어린이집 보조금 착오 지급에 대한 반납 절차 미흡 | 가족행복과 |
| 5. 예비비의 신중한 사용으로 불용액 최소화 | 해당부서 |
| 6. 인건비와 법정경비의 불합리한 편성 |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
| 7. 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 최소화 | 해당부서 |
| 8. 보조사업(국·도비) 전액 미집행 | 해당부서 |

1. 성과지표 달성률 제고

(1) 현 황

- 부서별 성과지표 달성현황
 - 총 19개 부서중
 - 100% 달성 6개부서(32%), 100% 미달성 13개부서(68%)

○ 지표별 달성현황

| 전 략 목표수 | 정책사업 목표 | | 성과지표 달성도 | | | |
|------------|---------|------------|---------------|------------|------------|--------|
| | 개수 | 성 과 지표수 | 초과달성 지 표 수 | 달 성 지표수 | 미달성 지표수 | 달성률(%) |
| 19 | 65 | 107 | 20 | 63 | 24 | 77.6 |

※ 부서별 성과지표 달성현황 (붙임)

(2) 문제점

-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임
- 성과 초과달성(130% 이상), 성과 미달성(100% 미만) 사업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성과보고서 검사결과 총 19개부서 중 100% 달성부서가 6개 부서 (32%), 100% 미달성 부서가 13개 부서(68%)이며, 지표별 달성도는 총 107건의 지표 중 달성 및 초과달성이 83건(77.6%), 미달성이 24건(22.4%)임

(3) 개선 및 권고사항

- 부서별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시 면밀한 검토와 실현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 대비 미달성한 지표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을 분석하여 지표가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붙임] 부서별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건)

| 부서명 | 전략 목표수 | 정책사업목표 | | 성과지표 달성도 | | | |
|--------------------|-----------|--------|-----------------------|---------------------|-----------------------|--------------------|--------|
| | | 개수 | 성 과 지 표 수 | 초과달성 지 표 수 | 달 성 지 표 수 | 미달성 지 표 수 | 달성률(%) |
| 계 | 19 | 65 | 107 | 20 | 63 | 24 | 77.6 |
| 정책예산담당관 (기획감사실) | 1 | 2 | 6 | 1 | 4 | 1 | 83.3 |
| 자치행정과 | 1 | 5 | 8 | 3 | 3 | 2 | 75.0 |
| 사회복지과 | 1 | 6 | 8 | 2 | 2 | 4 | 50.0 |
| 가족행복과 | 1 | 5 | 6 | 1 | 3 | 2 | 66.7 |
| 민원봉사과 | 1 | 2 | 5 | 1 | 3 | 1 | 80.0 |
| 세무회계과 | 1 | 2 | 4 | 0 | 4 | 0 | 100.0 |
| 문화체육과 | 1 | 6 | 7 | 1 | 3 | 3 | 57.1 |
| 안전총괄과 | 1 | 5 | 7 | 0 | 6 | 1 | 85.7 |
| 일자리경제과 | 1 | 5 | 9 | 3 | 5 | 1 | 88.9 |
| 환경위생과 | 1 | 6 | 8 | 4 | 4 | 0 | 100.0 |
| 농림과 | 1 | 3 | 5 | 1 | 4 | 0 | 100.0 |
| 건설교통과 | 1 | 6 | 7 | 0 | 5 | 2 | 71.4 |
| 도시건축과 | 1 | 1 | 5 | 2 | 3 | 0 | 100.0 |
| 상하수도과 | 1 | 2 | 2 | 0 | 1 | 1 | 50.0 |
| 군문화엑스포지원단 | 1 | 2 | 2 | 0 | 2 | 0 | 100.0 |
| 보건소 | 1 | 2 | 9 | 1 | 5 | 3 | 66.7 |
| 농업기술센터 | 1 | 2 | 4 | 0 | 2 | 2 | 50.0 |
| 의회사무과 | 1 | 1 | 2 | 0 | 2 | 0 | 100.0 |
| 공공시설사업소 | 1 | 2 | 3 | 0 | 2 | 1 | 66.7 |

2. 특별회계 운영 관리 철저

(1) 현 황

(단위: 천원)

| 회 계 명 | 부 서 | 회계연도 | 예산액 | 미집행액 | 비고 |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 도시건축과 | 2018 | 9,197 | 9,197 | |
| | | 2019 | 9,224 | 9,224 | |
| | | 2020 | 9,252 | 9,252 | |

(2)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126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계룡시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위 표의 현황과 같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액을 확보하였으나 운영한 실적이 없음

(3) 개선 및 권고사항

- 특별회계의 목적성과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및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의 존속·폐지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필요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계획 수립 및 집행 필요

3.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징수 절차 미흡

(1) 현 황

○ 세입내역

(단위: 원)

| 부서명 | 과목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비고 |
|-------|--------|---------------|---------------|-------------|----|
| 민원봉사과 | 지난연도수입 | 5,852,184,510 | 5,663,746,600 | 188,437,910 | |

○ 부과내역

(단위: 원)

| 연번 | 부과대상 | 부과일자 | 납기일자 | 금액 | 비고 |
|----|----------|------------|------------|-------------|---------------------|
| 계 | | | | 188,437,910 | |
| 1 | 지적재조사조정금 | 2016-10-10 | 2017-04-10 | 4,542,400 | |
| 2 | 지적재조사조정금 | 2019-01-08 | 2019-07-31 | 63,752,000 | |
| 3 | 지적재조사조정금 | 2019-01-08 | 2019-07-31 | 7,663,600 | |
| 4 | 지적재조사조정금 | 2019-01-08 | 2019-07-31 | 8,073,450 | |
| 5 | 지적재조사조정금 | 2019-01-08 | 2019-07-31 | 3,775,800 | |
| 6 | 지적재조사조정금 | 2019-01-09 | 2019-07-31 | 38,877,300 | |
| 7 | 지적재조사조정금 | 2019-01-09 | 2019-07-31 | 273,600 | |
| 8 | 지적재조사조정금 | 2019-01-09 | 2019-07-31 | 5,145,000 | |
| 9 | 지적재조사조정금 | 2019-01-09 | 2019-07-31 | 4,499,800 | |
| 10 | 지적재조사조정금 | 2019-01-09 | 2019-07-31 | 2,714,200 | |
| 11 | 지적재조사조정금 | 2019-01-09 | 2019-07-31 | 6,145,600 | |
| 12 | 지적재조사조정금 | 2019-01-09 | 2019-07-31 | 2,945,250 | |
| 13 | 지적재조사조정금 | 2019-01-09 | 2019-07-31 | 20,677,000 | |
| 14 | 지적재조사조정금 | 2019-01-09 | 2019-07-31 | 4,982,100 | |
| 15 | 지적재조사조정금 | 2019-07-04 | 2019-10-12 | 3,067,050 | |
| 16 | 지적재조사조정금 | 2019-07-04 | 2020-01-02 | 3,067,050 | |
| 17 | 지적재조사조정금 | 2019-07-04 | 2020-04-12 | 3,067,050 | |
| 18 | 지적재조사조정금 | 2019-01-09 | 2019-07-31 | 4,455,000 | 2021-02-16 수납 완료 |
| 19 | 기 타 | | | 714,660 | |

○ 독 촉

- 2020. 2. 7. : 두계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아 2020. 2. 28. 납기로 독촉

(2) 문제점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일로부터 50일 이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함에도 납부기한 이후 6개월이 지나 독촉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거 독촉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하나 압류 처리 하지 않음

(3) 개선 및 권고사항

-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한 행정 절차로 정당하게 징수되어야 할 세외수입이 체납되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당부
- 담당자 변경 시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하여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고 체납자의 신속한 납부 독려 필요

[붙임] 관련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조정금의 산정)

-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 징수 또는 공탁)

- ①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금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⑥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⑦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정금을 지급받을 자의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그 조정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조정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지적소관청이 과실 없이 조정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압류 또는 가압류에 따라 조정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 ⑧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이 있는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금 또는 제7항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한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서 독촉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4. 어린이집 보조금 착오 지급에 대한 반납 절차 미흡

(1) 현 황

○ 세입내역

(단위: 원)

| 부 서 명 | 과 목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 미수납액 | 비고 |
|-------|---------|------------|------------|------------|----|
| 가족행복과 | 지난년도 수입 | 99,461,680 | 44,061,980 | 55,399,700 | |

○ 부과내역

(단위: 원)

| 체 납 자 | 부과년도 | 부과대상 | 금 액 | 비 고 |
|-------------|------|------------|------------|----------|
| 계 | | | 55,399,790 | |
| 연 정 어 린 이 집 | 2018 | 2016년 착오지급 | 4,662,450 | |
| | | 2017년 착오지급 | 11,602,740 | |
| 상 록 어 린 이 집 | 2018 | 2015년 착오지급 | 1,491,170 | |
| | | 2016년 착오지급 | 2,330,580 | |
| | | 2017년 착오지급 | 3,554,160 | |
| 금 암 어 린 이 집 | 2016 | 기능사업비 반납 | 25,598,000 | 2017년 압류 |
| 개 인 | 2017 | | 510,600 | |
| 개 인 | 2013 | | 150,000 | |
| 개 인 | 2014 | | 200,000 | |
| 개 인 | 2017 | | 200,000 | |
| 개 인 | 2018 | | 100,000 | |
| 순흥안씨참의공문중 | 2017 | 불법 묘지 조성 | 5,000,000 | |

(2) 문제점

- 2018년 부과된 연정어린이집과 상록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미반납액에 대하여 독촉 및 압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음
- 개인들의 미납액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업무 처리 및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마땅히 징수되어야할 세외수입 미수납액 발생

(3) 개선 및 권고사항

- 담당자 인수인계 시 미납된 세외수입에 대해 철저하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져 관리가 되지 않아 장기간 미납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
- 미납된 세외수입에 대해 적극적 행정으로 체납된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 필요

5. 예비비의 신중한 사용으로 불용액 최소화

(1)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명 | 사 업 명 | 결정액 | 지출액 | 잔 액 | 비고 |
|---------|----------------|---------|---------|---------|----|
| 계 | | 263,511 | 147,889 | 115,621 | |
| 일자리경제과 | 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 | 19,800 | 18,398 | 1,402 | |
| 농림과 | 산림피해복구 및 예방사업 | 160,000 | 65,448 | 94,551 | |
| | 공원녹지 수해복구사업 | 1,711 | - | 1,711 | |
| 건설교통과 | 도로유지보수 | 50,000 | 34,743 | 15,257 | |
| 공공시설사업소 | 종합문화체육단지 운영 | 32,000 | 29,300 | 2,700 | |

※ 1,000천원 이상 미집행

(2) 문제점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임
- 또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고, 집행 시에는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야 하나 산림피해복구 및 예방사업은 160,000천원의 예비비 사용이 결정된 후 65,448천원만 집행하고 무려 59%인 94,551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김

(3) 개선 및 권고사항

-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지출요구 시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분석하여 판단하고 불용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필요

6. 인건비와 법정경비의 불합리한 편성

(1) 현 황

(단위 : 천원)

| 명 칭 | 예산액 | 본 예산 | 추경 예산 | 비 고 |
|-------|------------|------------|-----------|-----|
| 계 | 31,121,166 | 28,609,431 | 2,511,735 | |
| 인 건 비 | 27,482,588 | 25,588,257 | 1,894,331 | |
| 부 담 금 | 3,638,578 | 3,021,174 | 617,404 | |

(2) 문제점

-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 또는 현원 기준과 직급별로 평균호봉을 산정하고 조직 및 기능 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연금부담금 등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이 있음
-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인건비와 법정경비인 부담금을 본예산에 91.9%인 28,609,431천원을 반영하고 추경예산에 8.1%인 2,511,735천원을 편성

(3) 개선 및 권고사항

-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용재원을 늘리기 위하여 추경에 편법으로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함

7. 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 최소화

(1) 현 황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 50%이하 | | 51~99% | | 100%이상 | | 비고 |
|----|-----|-----------|-------|-----------|--------|--------|--------|--------|----|
|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
| 계 | 102 | 1,220,806 | 92 | 1,129,109 | 5 | 33,954 | 5 | 57,743 | |
| 공사 | 52 | 1,043,557 | 49 | 1,001,685 | 1 | 4,443 | 2 | 37,429 | |
| 용역 | 5 | 30,145 | 4 | 9,918 | 1 | 20,227 | - | - | |
| 물품 | 45 | 147,104 | 39 | 117,506 | 3 | 9,284 | 3 | 20,314 | |

(2) 문제점

- 설계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사업 계획의 변경(규모, 재료, 구조 등)과 설계의 부적합(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와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불가항력의 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시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비를 증액하여 사업 변경 실시
- 그러나 계약체결 후 102건에 1,220,806천원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이중 5건은 당초 계약금액 대비 57,743천원을 증액하여 100%가 넘게 설계 변경하여 사업 추진

(3)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업계획과 설계 반영 시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를 추진하여 계약 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개선 필요

8. 보조사업(국·도비)의 전액 미집행 최소화

(1) 현 황

(단위 : 천원)

| 부서명 | 사업명 | 예산액 | 재원별 | | |
|--------|--------------------|-----------|-----------|-----------|---------|
| | | | 계 | 국비 | 도비 |
| | 계 | 4,663,576 | 2,585,669 | 2,106,155 | 479,514 |
| 사회복지과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4,000 | 3,160 | 2,800 | 360 |
| 가족행복과 | 어린이집 확충사업(이전신축 외) | 120,000 | 90,000 | 60,000 | 30,000 |
|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28,850 | 28,850 | 28,850 | - |
| | 청소년 수련 활동 지원 | 2,000 | 2,000 | - | 2,000 |
|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 630 | 315 | - | 315 |
| |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 10,000 | 5,000 | - | 5,000 |
| 문화체육과 | 국민체육센터 건립 | 1,500,000 | 1,500,000 | 1,500,000 | - |
| | 엑스포 성공 국방 전우마리톤 대회 | 30,000 | 15,000 | - | 15,000 |
| 안전총괄과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8,850 | 8,850 | 7,500 | 1,350 |
| 환경위생과 |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 1,645,200 | 545,200 | 442,000 | 103,200 |
| |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 | 5,000 | 2,500 | - | 2,500 |
| 농림과 | 살처분 보상금 | 1,600 | 1,440 | 1,280 | 160 |
|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 2,000 | 880 | 400 | 480 |
| | 농산물 마케팅 지원 | 15,000 | 15,000 | 15,000 | - |
| | 원예시설 스마트폰 자동제어시스템 | 750 | 750 | - | 750 |
| | 유산균 토양발효농법 지원사업 | 750 | 750 | - | 750 |
| |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장비 지원 | 1,750 | 500 | - | 500 |
| | 식품 알레르기 및 면역강화제 지원 | 2,970 | 2,970 | - | 2,970 |
| | 원예작물 신소재 신농법 지원사업 | 1,500 | 1,500 | - | 1,500 |
| |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 10,000 | 10,000 | - | 10,000 |
| 건설교통과 | 향한리 비사길마을 도로개설공사 | 1,200,000 | 300,000 | - | 300,000 |
| 보건소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 17,500 | 11,375 | 8,750 | 2,625 |
|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896 | 771 | 717 | 54 |
| |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 26,544 | 13,272 | 13,272 | - |
| |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23,386 | 23,386 | 23,386 | - |
| 농업기술센터 |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 3,000 | 1,500 | 1,500 | - |
| |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 1,400 | 700 | 700 | - |

(2) 문제점

-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목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역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의존적으로 매칭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예산편성 후 국·도비가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총 27건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2,585,669천원(국비 2,106,155천원, 도비 479,514천원)만큼 미집행

(3)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필요에 의해 예산이 확보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전에 행정절차 등 충분한 검토와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반환금액이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 필요
- 보조금 매칭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요청이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배분으로 국·도비를 집행하지 못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등 개선 필요

IV. 수 범 사 례

2020회계 충청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표창

(1) 배 경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0회계 충청남도 시·군에서 추진한 지방세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로 세수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안정적 세수확보 분위기 조성(1977년 이후 매년 실시 중)

(2) 주요평가지표

- 지방세 부과액 대비 징수율 및 세수 기여도
-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및 정리 상황
- 시·군 자체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추진
- 세외수입 및 과태료 징수상황, 부실과세 방지노력
- 특수시책 추진 및 세무직 사기진작 노력 등

(3) 평가결과

- 계룡시는 충청남도에서 작은 세수 규모로 세수 기여도 및 세원 발굴 추진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 지방세 부과액 대비 징수율 도내 1위
 -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실적 도내 1위
 - 지난연도 대비 세수 증가율 도내 1위로

2020회계 충청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

2020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우수기관 선정

(1) 배 경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기 집행 정책에 발 맞추고, 상반기부터 체계적인 예산 관리로 연말에 지출이 집중되는 관행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낭비적 운영 개선 필요

(2) 추진내용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도전적 목표 설정
 - 2020년 상반기 : 행정안전부 목표율 57%, 자체 목표율 60%
 - 2020년 하반기 : 행정안전부 목표율 81.2% 자체 목표율 88.6%
- 부서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 매월 2회 부서별로 집행실적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주요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부진요인 파악 및 해소
- 추경 편성 시 ‘코로나 19’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 현안대응 및 즉시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의 전략적 편성 추진

(3) 결 과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지방재정집행 정부평가에서 상반기 최우수기관, 하반기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1억2천만원의 특별교부세, 충청남도에서 1천4백만원의 포상금을 교부받아 총 1억3천4백만원을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았음.
-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집행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 대상액 | 목표액(행안부) | 집행액 | 집행률 |
|-----|-------|----------|-------|-------|
| 상반기 | 966 | 551 | 752 | 77.9% |
| 하반기 | 2,533 | 2,056 | 2,214 | 87.4% |

